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기관 등을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허용〉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조사기관 등을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허용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조사기관 등을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허용

-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조사·수사한 조사기관 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u>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u>)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u> ----- ----- ----- -----.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u>위원</u>	제26조(보상금) ① ----- ----- ----- ----- ----- ----- ----- <u>위원</u>

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5.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회 또는 조사기관등-----
-----, 이 경
우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하여
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받거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③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외 조사기관·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 등을 규정하고 있고¹⁾, 조사기관등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²⁾. 이 때, 조사기관등은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호·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³⁾.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③ (생략)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
|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
|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 한편, 현행법 제26조제1항⁴⁾은 내부 공익신고자⁵⁾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내부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등을 통해 조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익위에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조사·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신분상,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음⁶⁾. 이러한 심리적 압박·보복 위협은 신고자가 신고 접수 기관과 별도로 권익위에 보상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법에 보장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 이에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 외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보상 신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익신고를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조치임⁸⁾을 고려할 때, 보상금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보상금 신청 창구를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의 조사기관등이 권익위에 ‘이첩 또는 송부’하도록 하는 표현은 단순히 보상금 신청을 이송하는 것이 아닌 조사기관등이 판단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접수한 것을 관할 기관으로 전달한다는 의미

7) 국회입법조사처, 김형진, ‘공익신고자의 이중 부담 - 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 전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개편 필요성’, 「이슈와 논점」 (제2458호), 2026.1.5.

8)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인 ‘이송’으로 수정이 필요함⁹⁾.

- 현행법령은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권익위가 이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를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 둘째, 보상금 지급 심사 결정 권한은 여전히 권익위에 있고, 조사기관 등은 신청서를 접수·이송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기관별 접수·이송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이송 지연·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절차 마련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법은 권익위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9) 현행법 제10조제6항은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권한 없는 기관에 접수된 것을 관할 기관에 보내는 것을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③ (생략)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생략)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¹⁾, 청렴포털¹²⁾ 내 보상금 지급 신청 이송 기능 마련¹³⁾ 등 조사기관등이 지체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고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추후 권익위의 미지급 결정 시 조사기관등에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 이를 예방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법률관계 확정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주는 절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⁴⁾.

-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공공의 수입 회복 사실 통지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안, 제2216128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12) ‘청렴포털(clean.go.kr)’은 반부패 정책업무 및 부패·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범정부 반부패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주요 공공기관 등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13) 다만, 공익신고는 다양한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경로별 공익신고 접수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렴포털 이용 비중은 알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관련하여, 권익위가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이송 포함)하여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수입의 회복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고자에게 통지한 사례는 권익위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음.

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보상금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조사기관등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조사·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준 조사기관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0조제4항¹⁵⁾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 조사기관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문언상 조사기관등의 보상금 신청 처리 권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③ (생략)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